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0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한정애 · 김윤덕 · 조인철

양부남 • 조계원 • 윤후덕

박용갑 • 이건태 • 신영대

이연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과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 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11조).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통고"를 "서면으로 통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u>지체 없이</u> 국회에 <u>통고</u> (通	<u>즉시</u> <u>서면으로</u>		
告)하여야 한다.	<u>통고</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3		
	조 및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u>효력이 없다.</u>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		
	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		
	<u>니한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계	<u>즉시</u>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②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